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여성복지 - 저소득한부모	3
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	3
가구원수별 선정기준	3
지원현황	3
청소년 한부모가족	3

여성복지

여성단체/시설

 · 저소득한부모 · 아이돌봄지원사업 · 가정폭력 · 여성폭력1366

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

-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: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
- 조손가족 :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
- 청소년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(모자가족 및 부자가족)으로서,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(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)

가구원수별 선정기준

※ 단위: 원/월

구분	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 기준중위소득	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
한부모 및 조손가족	기준중위소득 60%	2,073,693	2,660,890	3,240,578	3,798,413	4,336,789
청소년 한부모가족	기준중위소득 65%	2,246,501	2,882,630	3,510,627	4,114,947	4,698,188
	기준중위소득 72%	2,488,432	3,193,068	3,888,694	4,558,095	5,204,146

※ 신청문의처 : 읍면사무소 및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-3172~6

지원현황

- 아동양육비 :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
- 추가아동양육비
 -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: 자녀 1인당 월5만원
 -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: 자녀 1인당 월10만원
 -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: 자녀 1인당 월 5만원
- 고교생 자녀학비 :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% 지원 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- 아동교육 지원비(학용품비) : 한부모가족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원
- 생계비(생활보조금)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
- 생활지원금 :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6만원,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월 3만원
-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: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,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

- 아동양육비: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 35만원
-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: 청소년한부모인 “부” 또는 “모”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
- 고등학생 교육비: 청소년한부모인 “부” 또는 “모”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, 입학금 실비
- 자립촉진수당: 청소년한부모인 “부” 또는 “모”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